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60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학교장
재 결 일 자 2019. 12. 16.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8.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9.

8.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8. 13.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3학년 같은 반 시절부터 ‘피부가 까맣다, 더럽다’고 말하며 놀렸고, 청구인을 왕따 시키려고도 했으며, 청구인 교실까지 찾아와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외치는 등 위협하여, 청구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먼저 상처를 받은 피해자이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폭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진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청구인을 모든 책임의 주동자인 가해학생으로 보았는바, 이는 먼저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은 피해학생이 되고, 가만히 속으로 감내하는 학생은 가해자가 된 결과이다.

나. 학폭위에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의 참석이 없었고, 사전 전문가의 의견도 없었으며, 학부모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면밀한 확인 없이 한 사람의 의견

에 동의해서 이 사건 조치를 결정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그 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해학생 뿐만 아닌 다양한 학교 내의 여러 사건과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에 부적응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재조사하고, 다른 마찰이 있던 학생들과의 관계도 조사해야 하며, 수차례 병원진료와 진료비청구의 진실성도 조사가 필요하고, 피해학생 측은 여러 건의 학폭위 문제를 제기하고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변태라고 하거나)을 한 것에 대해서 당시 사과하고 종결이 됐고, 5학년 초에 화장실 칸안에 피해학생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사건도 청구인과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종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왕따를 시켰다’ 는 말했고 그 사실이 피해학생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학폭위 위원회는 9명 중 5명(교감, 인성부장, 학부모위원 2명,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는데, 학부모 위원 2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선출된 위원으로서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를 받아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학폭위 위원들은 서로 간의 의견교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이지, 한 명의 결정에 따라 여타 심의과정도 없이 동의만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다. 학폭위 위원들은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청구인 및 피해학생 측에 질의하고, 논의를 통해서 청구인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결정하고,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선도가능성도 고려하여 경감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출서류, 전담기구 사안조사서, 목격학생들의 확인서, 청구인 및 피해학생 측의 각 학폭위에서의 진술, 청구인 및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각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3학년 때인 2017. 11. 27. 체육시간에 강당에서 같은 반인 피해학생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네가 변태냐’ 등의 말을 해서 피해학생이 2017. 11. 28.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청구인 측이 바로 사과하고 피해학생 측이 그 사과를 받아들여, 전담기구에서 자체종결처리를 했다.

- 4학년 때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다른 반이 됐고, 피해학생은 A학생, B학생과 친했지만 4학년 말경부터 피해학생과 A학생의 사이가 틀어졌고,

5학년 때 청구인은 원래 친했던 C학생, D학생과 같은 반이 된 A학생, B학생과도 친해져서 5명이 함께 어울렸는데, 피해학생이 B학생과 놀려고 하여 청구인 무리 5명과 피해학생 간에 감정이 좋지 않았고, 2019. 3.경 피해학생이 A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청구인 무리 5명과 피해학생 간의 감정이 더욱 좋지 않게 됐고,

2019. 4. 18.경 청구인 무리 5명은 화장실 칸 안에 피해학생이 있음을 알고서 피해학생에게 욕설 등을 했고, 같은 날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청구인 등 가해학생 5명이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조건 없이 사과했으며, 피해학생 측이 이를 받아들여서, 전담기구는 다시 청구인 등 5명 가해학생들에 관해서 자체종결처리를 하였다.

- 피해학생은 A학생과 문제가 된 후로 상담치료를 시작했고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도 복용하게 됐는데, 화장실 사건 이후로 학교에서 수차 자해행동을 하고 양호실에 갔다 조퇴하거나 등교를 하지 않기도 했는데,

청구인은 3학년 사촌동생에게 ‘3학년 때 피해학생 때문에 힘들었다.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왕따시켰다’ 고 말했고, 사촌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그 말을 전했으며, 2019. 7.경 피해학생의 귀에까지 그 말이 들어가게 되면서, 피해학생은 2019. 7. 22. 청구인을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며 그 전에 전담기구에서 종결처리 됐던 2017. 11.경과 2019. 4.경 사안들도 함께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 피청구인은 학폭위 결정에 따라 2019. 8. 12. 청구인에 대해서 서면사과 등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해학생이 2019. 8. 24.경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 11.경 및 2019. 4.경 피해학생에게 한 말이나 행위는 학폭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사촌동생에게 한 말도 이러한 사건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 1)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먼저 청구인에 대한 헐담 등 가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는 없다.

2) 청구인은 학폭위 위원에 전문위원의 참석이 없었고, 학부모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는 자이며, 위원 한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식으로 이 사건 조치를 결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학폭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학폭위 위원 5명은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는 교감과 인성부장 및 외부 위원으로 학교전담 경찰관이 참여했고, 학부모위원 2명도 법률에 따라 선출된 위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를 받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였는바, 학폭위 위원 구성에 하자는 없고, 학폭위 위원들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의견 교환하고 의결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학생이 청구인 외 다른 학생들과도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이며, 피해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 건은 2017. 11.경 청구인을, 2019. 3.경 A학생을, 2019. 4.경 청구인 등 5명을, 2019. 7.경 청구인을 각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외에 다른 학교폭력 건은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인 보호자도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폭력 관련 건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며, 피해학생이 A학생과 문제가 된 후 우울증, 불안증 진단을 받고 상담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피해학생은 2019. 4. 화장실에서 청구인 등 5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후에 학교에서 자해행동을 하는 등 그 증상이 심화됐으며, 이 사건 처분 시점에는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재학 중이었으며,

학폭위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청구인에게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며, 심각성과 지속성에서 이미 2차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해서 종결처리가 됐었음에도 재차 비슷한 괴롭힘의 행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로 판단했고, 고의성 역시 보통의 점수로, 다만 청구인이 각 사건마다 사과를 한 점을 고려하여 반성정도는 매우 높음, 화해의 정도도 높음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총 7점으로 산출했지만,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청구인의 선도가능성을 보고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하여 1호 조치와 더불어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관계를 고려해서 2호 조치를 병과한 것으로, 위와 같은 학폭위 결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위 학폭위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